

고의에 의한 허위보도에 의해 직업상 평판·명성 등이 침해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McCarey v. Associated Newspapers Ltd. and Others
(1965) 20.B.(C.A.)

사실개요

방사선과 전문의사인 원고(Dr. Alexander

Geddes Mccarey)는 1961년 5월 26일 환자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다리에 약용염분 주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수로 수술용기가 담긴 손수레에 실려 있던 주사 약품병 중에서 외과용 알콜이 들어 있는 주사약병을 꺼내어 그 내용물을 환자에게 주사하여 주었고, 그 후 환자는 다리에서 혈전증 및 탈지작용이 생성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들이 각각 소유, 발행하는 4개의 신문사, 즉 「Daily Mail」, 「Daily Telegraph」, 「St. Melons and Midweek Reports」 및 「Liverpool Daily Post」 등의 취재하에 검사관에 의한 조사심리절차가 개시, 진행되었으나, 결국 그 사인이 불분명하다 하여 배심원들로부터 원고에게 무죄의 평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그 심리과정에서 1961년 7월 11일 원고가 위 사고당시 손수레에 담긴 약병들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여부를 둘러싸고,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변호인과 검시관의 쌍방으로부터 신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원고의 변호인이 원고에 대하여 그 첫 질문으로서 「위 주사약병이 담긴 손수레를 정돈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고 묻자, 위 검시관은 원고가 위 질문에 대하여 답변도 하기 전에 개입하여, 위 변호인에게, 「원고의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하려고 애쓰지 마시오」라고 말하고는 곧이어 원고에게, 「위 손수레를 확인, 정돈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이 아닌가?」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렇다」고 시인하였으며, 그 후 원고의 변호인과 검시관 사이에 위 변호인의 위 첫 질문 의도에 관하여 잠시 논쟁이 있었으나, 위 검시관도 결국은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게 유감스러운 실수는 있었으나 형사상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위 심리절차에서 위 손수레 및 약병 등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바로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인 1961년 7월 12일 피고들이 발행, 배부한 위 4개의 신문들에는, 원고가 그 잘못을 간호원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거나 그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시관으로부터 반대신문에 의한 추궁, 비난을 받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쓰여진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에 원고는, 그가 속해 있는 소송구조 기관인 Medical Defence Union의 법률자문에 따라, 바로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위 사고를 일반 대중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을 자극하여 그들로부터의 원고에 대한 위 사망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제기를 촉발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피고들에 대한 소송제기를 보류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위 유가족들로부터 소송제기가 없고, 그 가능성도 확실치 않게 되자, 역시 위 Medical Defence Union의 자문 및 보조 아래 1962년 8월 7일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피고들의 고의에 의한 위 허위보도로 말미암아 그의

직업관계등에 있어서의 평판, 명성 등이 크게 침해되었고, 공공연하게 추문에 올라 악평, 경멸 등의 대상으로 되었다고 주장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청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을 구하였을 뿐 그 이외의 어떤 특별한 손해배상을 구하지는 않았었다. 그 후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청구는 병합되어 1964년 4월 16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사이에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들은, 그들에게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의 특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배심원들로부터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각자 다른 비율에 의한 합계금 9,000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평결이 내려졌다.

이에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첫째, 제 1심이 원고에게 인용한 위 손해배상액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어서 부당하고, 둘째, 제 1심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내려 줌에 있어서 잘못 지시를 하였고, 셋째, 제 1심 판사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제기를 지연한 것과 관련하여 배심원들에게 지시를 함에 있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요 쟁점은 첫째의 손해배상액 산정문제였다.

판결요지

퍼슨(Pearson) 판사 : 위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제기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소송지연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제 1심 판사에게 배심원들에 대한 지시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다음에,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인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배심원들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정문제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가에 있다. 물론 항소심 판사들은 배심원들이 그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만약 그들이 배심원들이었다면 그들은 보다 많은, 혹은 보다 적은 손해배상액을 인용하였으리라는 이유만으로 배심원들의 평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사이에는 합리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그 사안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12명의 분별있는 사람들이라면 합리적으로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금액이 인용되었다고 생각될 때에는, 항소심 판사들은 제 1심 배심원들의 평결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의 문제는, 과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즉 징벌적인 배상이냐, 손해전보적인 배상이냐의 점인데, 종래에는 전자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였으나, 나는 *Rookes v. Barnard* 사건을 계기로 귀족원에게 확립된 바와 같이, 앞으로 양자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손해전보적인 배상명령 속에는 피해자에 대한 여러 종류의 보상이 포함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속에는 실제로 피해자가 잃은 것뿐만 아니라 장래 얻을 수 있었던 금전적인 손해, 또는 그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되거나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인 불이익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통상의 침해, 예컨대 그의

명예에 대한 비방, 훼손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통상 느끼게 될 심적인 고통이나 슬픔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만약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증가시키고 피해자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이며 오만한 태도 등이 있었다면, 그와 같은 점 역시 배상액의 산정요소로서 널리 참작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 주기위한 위와 같은 모든 요소들 이외에 다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별도의 배상액을 인용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위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를 보상해 주자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받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주어야 할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사고방법은 결국 징벌배상을 인용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엄격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원고는 위 가해행위로 인하여 직업을 잃거나 그 수입감소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하등의 주장, 입증도 없다. 또한 위 사건으로 원고가 사회적인 단체나 직업과 관련된 회합, 또는 가정모임 등에 가입함에 있어 저지를 당하거나, 기피당한 바가 있다는 입증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입은 원고의 심적 고통이나 슬픔을 가중시키거나 자존심의 손상을 악화시킬 만한 피고의 오만하고 모욕적인 태도 등이 있었음을 짐작케 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든, 정황에 의하여 추인되는 것이든, 원고의 평판에 대한 침해 및 위 허위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통상 느꼈을 심적 고통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될 사유라 할 것이다. 그런데 배심원들은 손해배상액으로서 무려 9,000 파운드나 인용하고 있는 바, 만약 위 금액을 연 4%의 비율로 자본증식을 시킨다면 원고는 평생동안 위 원금은 줄어들지 않는 채 매년 360 파운드의 순수익을 얻게 되고, 위 금원으로 연금증권을 구입한다면 원고는 보다 많은 수입을 얻게 될 것이다. 손해배상액의 많고 적음을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느끼기에 달린 것인데, 나는 위 금원이 너무나 많은 금액이라는 느낌을 쳐버릴 수가 없다.

위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액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고, 그 배상액이 너무나 과다하여 그 속에는 징벌로서의 배상액이나 원고에 대한 은혜적인 금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는 없다. 따라서,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인용한 제 1 심 판결은 위 손해액 범위문제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디플렉(DIPLOCK) 판사 : 오늘날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지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것은 보통법제도의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능이라고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기본원칙에는 *Rookes v. Barnard* 사건에서 Devlin 대법관이 판시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즉 첫째는, 18 세기의 자의적인 소수 독재정치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국가 관리들의 권력남용에 의한 역사적이고 변칙적인 예외이다. 둘째는, 가해자가 자기의 위법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법의 원칙에서 흘러나오는 예외이다. 이 둘째의 경우 그 손해배상은 피고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고로 하여금 그 위법행위의 대가로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의 있으므로, 이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그는 다만 공공정책에

기한 법질서에 따라 우연적인 혜택을 받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명예훼손으로 말미암아 입는 손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1) 중상적인 보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원고에 대하여 종래 가지고 있던 평판이 나빠지고, 그 결과 그들이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를 취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 (2) 중상적인 보도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원고의 슬픔 또는 심적 고통으로서, 피고가 위 허위보도를 하게 된 동기나 그 방법 등에 의하여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손해가 그것이다. 그밖에 Devlin 대법관이 말한 두 번째 예외에 의한 손해배상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즉, 피고가 처음부터 그 보도에 의하여 신문 등 보도물의 발행부수를 늘려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계획적으로 허위보도를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위 (2)의 가중손해가 생겼다면, 피고에게 위 Devlin 대법관이 분류한 징벌로서의 손해배상을 명하여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1)과 (2)의 통상손해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인 배상액을 산정하는 문제만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위 (1), (2)의 경우는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위 (1)의 경우에 허위보도적 결과 원고에 대한 평판이 나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태도변화를 일으켜, 예컨대 피고가 직장을 상실하거나 고용조건이 악화되는 경우 등에는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고 하겠으나, 사건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주장, 입증은 없다. 따라서, 법원이 이 경우에 원고의 피해를 금전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동일 단위로 셀 수 없는 것을 세려고 하는 것이 되어, 신체적인 침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옳고 그른 손해배상액이 나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배상액의 산정이, 같은 종류 또는 금전으로 헤아릴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 그 다른 피해자에게 주어진 배상액에 비교할 때에, 전혀 균형이 맞지 아니할 정도로 자의적인 경우에는 정의관념에 비추어 그러한 결과를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 다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적용하여야 할 배상액 산정기준과 전혀 무관하게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 사람의 명예가 그의 생명이나 신체보다 더 중요시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것은 과거 결투장에서의 가치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위 두 가지 손해는 서로 상당히 다르지만, 피해자에 대한 고통, 슬픔, 비탄, 불행감 등의 중요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 법원에서는 최근에 병원에서 2 차례의 수술을 받고 수개월 동안의 입원기간 중 상당한 고통을 겪은 끝에 한쪽 다리의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하고 평생 불구가 되어야 했던 30 세 된 한 여인에게 2,000 파운드의 손해배상을 명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바가 있다. 그 당시 이 법원에서는 4,000 파운드 내지 6,000 파운드 정도를 적당한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항소심 법원으로서의 계약 때문에 다만 항소를 기각하는 데 그친 것이다. 만약 이 사건에서 징벌로서의 배상, 또는 가중손해에 대한 배상이 적당한 경우라면 이 법원은 제 1 심 배심원의 평결에 관여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입었다는 일시적인 평판의 저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9,000 파운드의 배상금을 인용한다는 것은, 위에는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앞으로 평생동안 매일매일 겪게 될 심한 육체적인 불편에 대한 보상으로서 2,000 파운드 내지 6,000

파운드의 배상금을 명하는 것이 적정한 점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비 합리적인 금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를 받아들여 위 배심원의 평결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월머(WILLMER) 판사 : 배심원의 평결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이 함부로 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배심원 임석하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하기 때문이다 배상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법상 알려진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이 1심 배심원의 평결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기 위하여는, 1심 배심원들의 평결이 어떤 합리적인 12 사람들도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1심 배심원들보다 우월한 지혜를 항소심 법원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이 사건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관여하는 것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Lewis v. Daily Telegraph Ltd. 사건에서 Holroyd Pearce 판사가 말하였듯이, 그 평결에 사실 내지 진실과 동떨어진 그 무엇이 있다고 할 때에는, 항소심 법원도 이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1심 배심원들이 인용한 9,000 파운드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앞의 두 판사들과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항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